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0호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대학은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미래 신사업 입지의 최적지로서,
-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부터 본격 기업 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업역량강화 등 집중을 통해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 면적 : 29,302㎡(1단계 : 17,346㎡, 2단계 : 11,956㎡)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2년 ~ 2026년
 - 1단계 : 2022년 ~ 2024년(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대학교)
 - 2단계 : 2025년 ~ 2026년(경북대학교)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가. 주요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첨단 제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업(M70)• 전문 서비스업(M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교육 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나. 배치계획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10,771.0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1	첨단 제조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637.0	52.3	1단계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 서비스업(M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교육 서비스업(P85)			
	출판업(J58)					
	복합1	첨단 제조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복합 용지	첨단 제조산업	전기장비 제조업(C28)	1,575.5 (3,151.0)	14.6	1단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연구개발업(M70)				
		전문 서비스업(M71)				
	첨단 연구산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교육 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복합2	첨단 제조산업	정보서비스업(J63)	3,558.5 (7,117.0)	33.1	2단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 서비스업(M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교육 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는 토지이용계획 상 복합용지 면적이며,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100분의 50을 적용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사장 이한준
- 경북대학교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총장 홍원화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100%가 학교로 이용

구분	계	학교	기타
필지수	3	3	-
면적(m ²)	29,302	29,302	-
구성비(%)	100.0	100.0	-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100%가 국유지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3	3	-	-
면적(m ²)	29,302	29,302	-	-
구성비(%)	100.0	100.0	-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302	-	29,302	100.0	
주거 지역	소계	29,302	감) 29,30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02	감) 29,302	-	-
공업 지역	소계	-	증) 29,302	29,302	100.0
	준공업지역	-	증) 29,302	29,302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합계	29,302	17,346	11,956	100.0	59.3	40.7	
산업시설용지	5,637	5,637	-	19.2	19.2	-	
복합용지	10,268	3,151	7,117	35.0	10.8	24.2	
	복합1	3,151	3,151	10.8	10.8	-	
	복합2	7,117	-	7,117	24.2	-	24.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658	7,345	4,313	39.9	25.2	14.7
	도 로	6,080	4,460	1,620	20.9	15.4	5.5
	녹 지	5,578	2,885	2,693	19.0	9.8	9.2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1,739	1,213	526	5.9	4.1	1.8
	체육시설	1,213	1,213	-	4.1	4.1	0.0
	주차장	526	-	526	1.8	0.0	1.8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계	4	482	6,080	2	132	1,620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광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대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중로	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 1단계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중로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 1단계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경1	12	집산 도로	172	경북대학교 서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경2	12	국지 도로	178	중로 3-경1	녹지B	일반 도로	-	-	-

○ 2단계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소로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 2단계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경1	10	국지 도로	37	중로 3-경1	소로 1-경2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경2	10	국지 도로	95	소로 1-경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일반 도로	-	-	-

나)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526	-	1개소
신설	주차장A	주차장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526	-	2단계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5,578	-	3개소
신설	녹지A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2,384	-	1단계
신설	녹지B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501	-	1단계
신설	녹지C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2,693	-	2단계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1,213	-	1개소
신설	체육시설A	체육시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1,213	-	1단계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용수공급

○ 공산정수장 급수구역(Q=40,000m³/일)으로 연암배수지(V=13,000m³)를 통하여 공급

구분	급수량(m ³ /일)		
	합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최대 용수량	246.8	206.1	40.7

나) 전력공급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3,245kW이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다) 열(연료)공급

○ 사업지구 열 수요량은 3,468Gcal/년이며, 도시가스는 지역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공급

라) 통신공급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840회선이 필요하며, 통신공급은 (주)케이티와 협의하여 공급

5) 환경기초시설

가) 오·폐수처리

○ 오수는 기존 합류식 관로(BOX 2.0m×1.5m)에 연계하여 신청공공하수처리장(Q=680,000m³/일)에서 처리

○ 폐수는 폐수발생 업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하도록 1차 전처리 후 방류

구분	계획1일 최대 발생량(m ³ /일)	비고
생활오수	196.8	
공업폐수	16.1	
합계	212.9	

나) 폐기물처리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은 7.080ton/일로 예측되며,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위탁 처리

9. 재원조달계획

가. 추정사업비

1) 총사업비

구분	금액(억원)	비고
소계	42.9	
용지비	-	-
조성비	42.9	공사비, 설계비, 부담금 등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조성비

구분	계	부지조성 공사비	기타시설 공사비	용역비	부담금	부대비 및 예비비	비고
금액(억원)	42.9	17.3	11.2	8.2	3.6	2.6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 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42.9	-	-	3.0	18.6	3.0	18.3
용지비	-	-	-	-	-	-	-
조성비	LH	21.6	-	-	3.0	18.6	-
	경북대	21.3	-	-	-	-	3.0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활용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면적(m ²)	필지수(개)	면적(m ²)	필지수(개)
합계	29,302	3	29,302	3
학교	29,302	3	29,302	3

2) 편입 세부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명	주소	소유관계	
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1	학교	289,059	17,548	국(교육부)	-	-	
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8	학교	1,185	26	국(교육부)	-	-	
3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5	학교	340,942	11,728	국(교육부)	-	-	

11. 에너지사용계획

가. 전력수요 예측

1) 사업지구 전력수요

구 분	연면적 (m ²)	단위부하 (VA/m ²)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산업시설용지	22,548	140	3,157	50	1,578.5
복합용지(산업)	20,536	140	2,875	50	1,437.5
복합용지(지원)	20,536	135	2,772	60	1,663.2
도로, 주차장	6,606	1.25	8	100	8.0
계	-	-	8,812	-	4,687
변압기 설비용량(kVA)	4,687.2KVA ÷ 1.3(부등율)				3,606
최대부하(kW)	3,606KVA × 0.9(역율)				3,245

* 도로·주차장은 부지면적 기준임

나. 열(연료)수요 예측

1) 사업지구 난방·급탕 열수요

구 분	연간 열 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난 방	급 탕	계	난 방	급 탕	계
산업시설용지	846	212	1,058	1.32	0.13	1.45
복합용지	1,927	483	2,410	3.00	0.30	3.30
합 계	2,773	695	3,468	4.32	0.43	4.75
동시사용률 고려시 최대열부하	4.70Gcal/hr					

2) 사업지구 취사용 열수요

구 분	규 모 (m ²)	적용원단위 (Mcal/m ² ·년)	열수요량 (Gcal/년)	비 고
산업시설용지	22,548	2.84	64	
복합용지	41,072	2.84	117	
합 계	63,620	-	181	

3) 사업지구 총 연료수요

○ 사업지구의 총 연료수요량은 3,649Gcal/년으로 산업시설용지 1,122Gcal/년, 복합용지 2,527Gcal/년임

구 분	난방 (Gcal/년)	급탕 (Gcal/년)	취사 (Gcal/년)	계 (Gcal/년)
산업시설용지	846	212	64	1,122
복합용지	1,927	483	117	2,527
합 계	2,773	695	181	3,649

다.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 제외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되어 30만m² 이상인 사업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용도 지역	합계	29,302	-	29,302	100.0
	주 거 지 역	29,302	감)	29,302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02	감)	29,302	-
	공 업 지 역	-	증)	29,302	100.0
	준공업지역	-	증)	29,302	100.0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29,302 -	- 29,302	220 400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1)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m ²)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	98-1	공항로 (대로2-6)	일반시가지 경관지구	경대교	산격 지역중심	28,665 (948)	1,303 (89)	양측 11	-	-

* ()는 사업지구 내 포함 면적 및 연장임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계	4	482	6,080	2	132	1,620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광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대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중로	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 1단계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중로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 1단계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경1	12	집산 도로	172	경북대학교 서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경2	12	국지 도로	178	중로 3-경1	녹지B	일반 도로	-	-	-

○ 2단계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소로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 2단계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경1	10	국지 도로	37	중로 3-경1	소로 1-경2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경2	10	국지 도로	95	소로 1-경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경1	• 도로 신설 - B=12m, L=172m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경2	• 도로 신설 - B=12m, L=178m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경1	• 도로 신설 - B=10m, L=37m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경2	• 도로 신설 - B=10m, L=95m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5,578	-	3개소
신설	녹지A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2,384	-	1단계
신설	녹지B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501	-	1단계
신설	녹지C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2,693	-	2단계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
녹지A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2,384m ²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녹지B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501m ²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녹지C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2,693m ²	•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라.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설	①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	29,30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신설	①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29,30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합계		5,637	-	5,637	-
산업1	산업1	5,637	-	5,637	1단계

나) 복합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합계		10,268	-	10,268	-
복합1	복합1	3,151	-	3,151	1단계
복합2	복합2	7,117	-	7,117	2단계

다) 주차장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합계		526	-	526	-
주차장1	주차장1	526	-	526	2단계

라) 체육시설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합계		1,213	-	1,213	-
체육시설1	체육시설1	1,213	-	1,213	1단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주)}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p>※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중분류 C21, C26~30, M70~72, P85, J58, J62, J63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며,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중사업장부터 4중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층 이하

주 :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르며, 오피스텔은 제외함.
지원시설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사이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 건축선 후퇴의 기준을 블록별 또는 가로별로 설정하도록 하며, 건축선 후퇴에 따른 공지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 지형의 특성(높이차)을 활용하여 차량, 보행의 진·출입을 위한 건축계획, 지하주차장 공동개발 등을 수립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직접화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물 입면 30% 이상은 투시성이 높은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담장,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생태면적을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을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4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나) 복합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복합1 ~ 복합2	복합1 ~ 복합2	산업 시설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중분류 C21, C26~30, M70~72, P85, J58, J62, J63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며,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 저장하는 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지원 시설 (전체 연면적의 50%이하)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20%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주 : 지원시설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	복합1 ~ 복합2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 이하 	
		높이	복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층 이하
			복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의 분절·분동 배치를 권장한다. • 지형의 특성(높이차)을 활용하여 차량, 보행의 진·출입을 위한 건축계획, 지하주차장 공동개발 등을 수립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 및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에 요철 및 변화요소를 도입한다. - 입면 및 일부분에 녹화, 자연재료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 지붕 및 옥상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 도입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1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복합2 : 인접주거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인접한 대지변으로 높이 1~1.5m의 담장을 설치하며,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수목식재를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생태면적을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을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4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휴식 및 통행을 위하여 상시 개방한다.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 2장 제15조(전면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인접획지간 연계 개발 할 수 있다.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지상차량동선은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 1장 제 12조(교통처리 및 동선)’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상차량동선은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주1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관련기준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성 검토’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지형 단차 및 진·출입 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운용을 위하여 연결한 2개의 획지에 한해 주차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개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개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일원(경북대학교)	29,302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청 산단진흥과(053-803-6023), 북구청 일자리 정책과(053-665-266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